※ 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소비생활의 안전을 촉진하며 국민 소비생활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상품을 설계, 생산,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경영인은 상품을 제공하여 시장 유통에 진입시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시 마땅히 같은 상품 또는 서비스가 현지의 과학기술 또는 전문적인 수준에 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에 부합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재산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땅히 현저한 위치에 경고표시를 하거나 위험에 대한 긴급처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와 정형화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마땅히 30일 이내의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가 전체 조항의 내용을 신중히 읽어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경영인은 우편매매 또는 방문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 조건, 판매자의 성명, 명칭, 책임자, 사무소 또는 거주지를 구매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우편 또는 방문판매를 한 소비자는 수수한 상품을 구매하지 아니하고자 할 시 상품을 수수한 후 7일 이내에 상품을 반환하거나 서면으로 기업경영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거나 어떠한 비용 또는 대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기업경영인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소비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광고의 내용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기업경영인이 소비자에 대하여 신용과 관련된 거래에 종사하는 경우 광고 상에 총비용의 연백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한하며 소비자 보호단체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취지로 하여야 한다.

직할시 또는 현(시)정부는 기업경영인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생명, 신체,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경과 및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소비자와 기업경영인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인하여 소비분쟁이 발생하였을 시 소비자는 기업경영인, 소비자보호단체 또는 소비자서비스센터 또는 그 지사에 제소할 수 있고, 기업경영인은 소비자의 제소에 대하여 제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제소를 통하여 적절한 처리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시 직할시 또는 현(시) 소비분쟁조정위원회(消費爭議調解委員會)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비소송은 소비관계 발생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설립한지 3년이 넘고 소비자보호위원회의 감정 결과가 우량하며 소비자보호전문인원을 설치하고 소비자보호관의 동의를 득한 경우 자신의 명의로 제50조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또는 제53조의 부작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